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714
----------	-------

발의연월일 : 2025. 11. 28.

발 의 자 : 유동수 · 김남근 · 박찬대
박선원 · 허 영 · 강준현
이정문 · 박범계 · 민병덕
김승원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이용자 신뢰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단순히 금융회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용자의 재산상 피해를 동시에 유발하며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며, 해킹 수법 또한 날로 고도화 · 조직화되고 있어 사전 예방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중대한 전자금융 사고 발생이나 법규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제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정보보호 의무 이행력을 강화하는 한편, 정보보호 내부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기술부문 보안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권의 정보보

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안 제21조의2제1항, 안 제21조의2제6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 1) 대표이사의 책임 하에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적극적으로 보안 강화에 나설 수 있도록 대표이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임을 명확히 함.
- 2)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안 제21조의7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와 알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공시제도를 마련함.

다. 과징금 규정 정비(안 제46조)

- 1)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누설·목적 외 활용, 침해사고로 인한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유출, 그 외 이용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사고 등 발생의 경우 총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
- 2)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

라. 이행강제금 마련(안 제46조의3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보완조치 명령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5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함.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1조의7의 정보보호 공시

제21조의2의 제목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을 “(대표이사 및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5호 중 “안정성”을 각각 “안전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이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을 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 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제5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

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⑪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⑫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3제3항 중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을 “제1항”으로, “점검하게 할”을 “점검할”로 한다.

제2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7(정보보호 공시)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정보보호부문에 관한 지배구조
 2. 정보보호부문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현황
 3. 그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제28조제4항 본문 중 “제46조의2”를 “제46조의2, 제46조의3”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천만원 이하의”를 “업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제5항,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 그 외 업무 영향,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노력
4.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
5. 피해 확산 방지, 이용자 피해 회복 노력 등 사후 조치
6. 업무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에 제4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3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조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

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1항제10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종전의 제10호) 중 “제39조제3항”을 “제21조의3제3항, 제39조제3항”으로, “출석요구”를 “출석요구, 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제2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2제3항”을 “제21조의2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임명한 자

5의2. 제21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제51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되는 경우
를 포함한다)되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또는
재직 중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하여는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본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
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3제4항제2호다목 중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 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③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u>5. 제21조의7의 정보보호 공시</u>
제21조의2(<u>정보보호최고책임자</u> <u>지정</u>) <u><신 설></u>	제21조의2(<u>대표이사 및 정보보호</u> <u>최고책임자의 책무</u>) ① <u>금융회</u> <u>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대표이</u> <u>사(「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u> <u>둔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 외</u> <u>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u> <u>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전자</u> <u>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u> <u>용자 보호를 위한 최종적인 책</u> <u>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조치를</u> <u>실효성 있게 하여야 한다.</u>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와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⑤ 제2항----- -----

수행한다.

1.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
용자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
획의 수립

2. ~ 4. (생략)

5.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
정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신설>

<신설>

-----.

1. -----
----- 안전성 -----

2. ~ 4. (현행과 같음)

5. ----- 안
전성 -----

<삭제>

⑥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제5
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항
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
다.

⑦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제5
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
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
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업
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
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u>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u><신 설></u>	<u>⑨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한다.</u>
<u><신 설></u>	<u>⑩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보수 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⑪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⑫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제7항에 따른 독립성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② (생략)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
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
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
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③ ----- 제1항-----

----- 점검할 -----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정보보호 공시) ① 금
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
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1. 정보보호부문에 관한 지배구
조

2. 정보보호부문에 관한 예산,
조직, 인력 현황

3. 그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자산,
매출액 및 서비스 이용자 수 등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
다.

제46조(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46조(과징금) ①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
융업자의 전체 매출액의 100분
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에서 -----.

1.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2.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3. 그 외 업무 영향, 이용자 피해 등이 중대한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업

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무정지기간 동안 얻을 이익의 범위에서 -----
-----.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비슷한 규모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제표나 그 밖의 회계자료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위반횟수
3.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노력

	<u>4.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의 규모</u> <u>5. 피해 확산 방지, 이용자 피해 회복 노력 등 사후 조치</u> <u>6. 업무정지기간(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u><신 설></u>	<u>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산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 ⑤ (생략)</u>	<u>⑥ · 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u>
<u><신 설></u>	<u>⑧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제1항제1호에 규정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u>
<u><신 설></u>	<u>⑨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 설></u>	<u>제46조의3 (이행강제금) ① 금융</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까지 조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그 기한까지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9조제6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간,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밝힌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과태료) ①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3항·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출석요구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 9. (생략)

11.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2.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정보기술부문 업무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겸직하게 하거나 겸직한 자

<신설>

1의3. 제21조의3제3항, 제39조제3항--- 출석요구, 점검 ---

2. ~ 9. (현행과 같음)

10.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제21조의2제2항 또는 제3항-----

3. 제21조의2제4항-----
----- 제5항-----

3의2.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의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명한 자

4. <u>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자</u> 5. (생략) <u><신설></u> 6.·7.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5. ~ 12. (생략) ④ (생략)	<u><삭제></u> 5. (현행과 같음) 5의2. <u>제21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u> 6.·7.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u>제21조의2제10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책임자에 대한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아니한 자</u> 5. ~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